## [양식 제21호]

## (11실종22부재)선고신고서

( 년 월 일)

※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, 선택항목에는 '영표(○)'로 표시하기 바랍니다.

**야시** 대한법률구조공단

		성	명		한글	(성)	/ (명)		한	자	(성) /(1	명)			
①실종자 (잔류자)	2	주민등록번호													
	또	또는 출생연월일													
	등록기준지														
	최후주소												성별		1남 2여
②실종기간만료일							월		일						
③사건번호															
④재판확정일자		년		]	월		일		법원명						
⑤기타사항															
⑥신고인	성명				① 또는 서명		주민등록 번 호		_				자격		
	주소								전화			0]	메일		
⑦제출인	)제출인 성명			주민등록번호			Ž	_							

## 작 성 방 법

- ※ 이 신고는 실종(부재)선고의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(심판)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.
- ※ 등록기준지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
- ※주민등록번호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 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
- ①란:최후주소와 주민등록번호, ②란 실종기간만료일, ③란 사건번호는 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.
- ⑤란: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- ⑥란:법정대리인 등 해당되는 자격을 기재합니다.
- ⑦란: 제출인(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
## 첨 부 서 류

- 1. 실종(부재)선고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.
- \*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.
- 2. 실종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.
- 3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]
 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- 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
- \*\*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